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583호 관련
----------	------------

제안년월일: 2025. 1. 15.

제안자: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도 감독에 관한 조문을 명확하게 함.

2. 수정 주요골자

- 제3조 중 “지도·감독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한다”로 수정함.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지도·감독할 수 있다”를 “지도·감독한다”로 한다.

『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도·감독) 부천시장은 출 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 버보안 업무를 <u>지도·감독할 수</u> <u>있다</u> .	제3조(지도·감독) ----- ----- ----- <u>지도·감독한다</u> .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도·감독) 부천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